

2024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

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“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사업 개요

1. 지원 내용

○ 지원 인원 : 3,900명

※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지원 금액 : 1인당 500만원

< 차수별 지원 금액 >

구분	1차	2차	3차
지원시기	취업 후 1개월	취업 후 6개월	취업 후 12개월
지원금액	250만원	100만원	150만원

※ 단, 본인의 1차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적용

(예시) **2022년도 1차 수령자가 2024년도에 3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** →
2022년도 공고에 따라 (선진국) 3차 100만원, (신흥국) 3차 200만원 지원

2. 신청 및 지급 절차



- ① 신청자는 취업 전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마쳐야 함
 - ② 취업인정기준 : 아래 표. 지원 자격 요건 2. 취업인정기준 참조
 - ③ 1차 신청자는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에 대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취업사실확인을 받은 후 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함(단, 3차 신청자 중 이직한 자도 취업사실확인 필수)
 - 가. 취업 국가 영사관에서 공증
 - 나.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
 - 다. 월드잡플러스에서 취업사실확인 신청
 - ④ 1·2·3차 지원금 신청 전 본인의 구체적인 경력(취업처, 재직기간 등)을 입력해야 함
 - ⑤ 1·2·3차 지원금 신청 전 취업만족도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함
 - ⑥ 1·2·3차 지원금 신청 시, 모바일 앱 위치정보를 반드시 연동해야 함
(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후 사용자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요)
 - ⑦ 반려 시, 신청서류 등을 보완하여 본인의 신청기한 내에 재신청을 완료해야 함
- ※ 2차 및 3차 신청시에는 ④번부터 실시(취업사실확인은 공단에서 별도 진행함)

지원 자격 요건

1. 지원대상 (①~⑤를 모두 만족해야 함)

① 만 34세 이하인 자. 단,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

실 군복무기간	복무 인정기간	정착지원금 신청 가능 연령	비고
1개월 이하	0년	만 34세 이하	'89.1.1. 이후 출생자
1개월 초과~12개월 이하	1년	만 35세 이하	'88.1.1. 이후 출생자
12개월 초과~24개월 이하	2년	만 36세 이하	'87.1.1. 이후 출생자
24개월 초과~36개월 이하	3년	만 37세 이하	'86.1.1. 이후 출생자
36개월 초과~48개월 이하	4년	만 38세 이하	'85.1.1. 이후 출생자
48개월 초과	5년	만 39세 이하	'84.1.1. 이후 출생자

- ② 신청자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
- (미혼인 경우)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 - (기혼인 경우)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
<기준 금액>

취업일자	건강보험료율	보험료 기준 금액*
'24년 1월까지	7.09%	₩364,010
'24년 2월부터	7.09%	₩390,360

* 보험료 기준 금액은 가구소득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, 지역가입자에도 준용

(단, **직장가입자의 경우**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/2인 3.545%이므로 **부과금액의 2배**를 합산)

* **사전모의계산기**를 통해 소득분위 초과여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 가능. 단, 사전 모의계산 결과와 담당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조회 값은 다를 수 있음

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(회원가입)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

*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

④ 이전에 정착지원금(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)을 받은 적이 없는 자

⑤ 취업인정기준(II.2 참고)을 모두 충족하는 자

2. 취업인정기준 (①~⑤를 모두 만족해야 함)

① 취업비자 :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,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

-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 기준은 [붙임2] 참조
- 취업국가 영주권자, (유사)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재직 중이라도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 인정 불가
- 워킹홀리데이 비자*는 인정 불가

* 단,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(해외취업알선사업, K-Move스쿨 등)을 통한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

② 취업직종 : 단순 노무직종 제외(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적용)

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,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(직무기술서)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

<제외 직종(단순노무직종)>

청소(환경미화)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·육아도우미), 음식서비스종사자(주방보조·음식서빙 등), 숙박시설종사자(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) 등 기타 단순 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

③ 임금수준 : 연봉 1,700만원 이상

- 연봉계산 시 환율은 '24. 1. 2. 고시환율 적용
- * '23년도 취업 후 '24년도에 1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'24년도 공고 환율 기준 적용
-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,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

④ 근로계약기간 : 1년 이상

-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(호주, 홍콩 등)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⑤ 취업 업체 : 다국적기업, 현지로컬기업, 국내기업 해외법인, 한상 등

- 국내 기업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,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
- 근무지는 반드시 외국이어야 함(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국내 근무자 지원 불가)

1. 사업일정

- 사업기간 : 2024. 1. 1.부터 ~ **예산소진 시까지**

*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(마감 2주전 월드잡 공지, 개별알림 없음)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

- 지원금 지급일 : 최종승인자의 서류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·20일

신청 일자	지급일	예시
1일~15일	다음 달 10일	'23.12.15.~12.31. 신청 건 : '24.1.20. 지급 예정
16일~31일	다음 달 20일	

*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변경될 수 있음

2. 신청기한

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, **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**

- 1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

- 2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

* 단,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

- 3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

* 단, 12개월(365일)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
※ 1차, 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 시

- (신청기한) 최초 취업기업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.
이직 준비기간은 재직기간 불포함(준비기간으로 인한 신청기한 연장 불가)

- (지원금액) 1차, 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

- (취업인정) 1차 지원금 취업인정기준과 동일

- (재직기간) 1,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*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(재직증명서 기준)이 되어야 함

* 이직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서도 인정 가능

○ '22.'23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

구분	1차 지원금	2차 지원금	3차 지원금
취업일자	'23.7.2.이후	'23.5.2.이후 (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	'22.11.2.이후 (1·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

3.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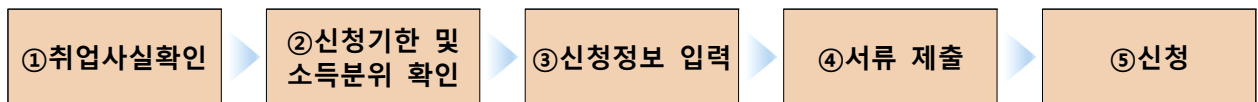
□ 신청메뉴

PC	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→사후지원센터→출국 및 현지 정착→정착지원금 신청
모바일	월드잡플러스 앱 설치→로그인→사후지원센터→출국 및 현지 정착→정착지원금 신청

(PC 화면)

(모바일 화면)

□ 신청절차



① 취업사실확인 (근로계약서·재직증명서)

- 취업국가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확인(협약국) or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*

* 「월드잡플러스-사후지원센터-나의경력관리-취업사실확인(정착지원금/연수/알선)」 메뉴에서 신청 후 "승인"까지 완료되어야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

② 신청기한 및 소득분위 확인

- (신청기한) 나의 취업일 입력 시 자동으로 신청기한 계산
- (소득분위 모의 계산기) 결혼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가구원의 취업 직전월 건강보험료 입력

③ 신청정보 입력

- 매 차수별 신청 시 「월드잡플러스 앱 - 위치정보 제공」에 동의하여야 함
- 설문조사·경력정보* 등 입력

* 경력정보 : 「월드잡플러스(PC)-사후지원센터-나의경력관리-해외경력정보」에서 경력을 미리 입력하는 경우 정착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해당정보를 연계할 수 있음

④ 서류 제출

- (제출서류) “4. 제출서류” 참고

* '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본인용)', '신청자 자체 점검 확인서'는 전자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

- (파일형식) 이미지 파일(jpg, png, pdf 등)로 각각 업로드

- (제출방법) “첨부파일 등록/수정” 버튼 클릭 후 업로드

* 취업사실확인을 월드잡플러스에서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·재직증명서 파일 불러오기 가능

⑤ 신청

- “정착지원금 신청하기” 버튼 클릭 시 신청 완료

- 모든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신청버튼 활성화됨

4. 제출서류

1차 지원금	(1) 유효한 취업비자 (2) 근로계약서 (3) 재직증명서(취업 후 1개월 이후 발급) (4) 본인 통장 사본(외국계좌 및 증권계좌 불가)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본) (6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본인)(전자서명)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) (8) (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)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(9)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(전자작성 및 서명)
---------------	---

2차 지원금	(1) 유효한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취업 후 6개월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본인) <u>(전자서명)</u> (4)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<u>(전자작성 및 서명)</u>
3차 지원금 (동일기업 근무자)	(1) 유효한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12개월(365일)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본인) <u>(전자서명)</u> (4)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<u>(전자작성 및 서명)</u>
3차 지원금 (이직한 경우)	(1) 유효한 취업비자 (2) 1.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(4)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(5)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본인) <u>(전자서명)</u> (6)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 <u>(전자작성 및 서명)</u>

※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함
- 근로계약서·재직증명서 작성 언어가 국·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
- *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
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① 영사관 공증 ② 아포스티유 공증 ③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 신청·승인 중 한 가지를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함

지원금 신청 단계		취업사실확인 절차
1차		필수
2차		생략
3차	동일기업 근무 시	생략
	근속 6개월 후 이직	필수

- 서류 승인 후 제출서류 및 취업일자는 수정 불가

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안내

차수	제출서류	유의사항
1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▶미국: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J1 비자 포함) ▶일본: 재류기간 확인 가능한 재류카드(앞면) 제출(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가) ▶태국: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베트남: LD비자 발급일로부터 취업일 인정 ▶비자 발급일이 입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
	② 근로 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 ▶해당 사항이 기재된 Offer Letter 등도 가능, 사업주 서명 필수 ▶미국: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
	③ 재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1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▶재직증명서상 근무시작일과 전산상 취업일은 동일해야 함
	④ 통장 사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래 가능한 한국 시중은행의 통장 사본/인터넷 통장 표지/계좌개설 확인서 중 택 1 - 제출한 통장 사본과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는 동일해야 함 ▶적금통장, 증권계좌, 해외계좌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 ▶불가피한 경우 사유 작성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 통장 제출 가능 ▶인터넷뱅킹 단순 캡처 화면 인정 불가
	⑤ 가족 관계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한글) 제출 ▶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하며, 취업 전(前)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 제출(일반본, 영문본 제출시 반려됨)
	⑥ 개인정보 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본인용) 월드잡플러스 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 - (가족용)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으로 1부 제출 ▶가족용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/자녀(기혼인 경우)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며, 만 14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신 정보 기재 가능 ▶가족 구성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필수 작성(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 작성, 둘다없는 경우 현지신분증 제출) ▶부모님의 이혼, 사망의 사유로 모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, 부 또는 모(부양자)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를 추가로 제출 ([붙임3] 참조)
	⑦ 자체점검 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고문에 첨부된 「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」 작성 및 제출(서명필수) -신청자격 제외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"예"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청 불가
	⑧ 병적 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실복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, 정부24(병무청)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2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미국: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J1 비자 포함) ▶일본: 재류기간 확인 가능한 재류카드(앞면) 제출(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가) ▶태국: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중국: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 </div>
	② 재직 증명서	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서류 발급 일자와 근무 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 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 </div>
	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	
	④ 신청자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「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」	
3차 지원금 ↓ 동일 기업 재직인 경우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미국: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J1 비자 포함) ▶일본: 재류기간 확인 가능한 재류카드(앞면) 제출(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가) ▶태국: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중국: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 </div>
	- 1.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,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	
	② 재직 증명서	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근무시작 12개월(365일)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12개월(365일)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 </div>
	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	
④ 신청자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「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」		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3차 지원금 ↓ 이직한 경우	① 취업 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체류 가능한 비자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미국: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J1 비자 포함) ▶일본: 재류기간 확인 가능한 재류카드(앞면) 제출(재류자격인정증명서 불가) ▶태국: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중국: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.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,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
	② 재직 증명서 (이직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 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-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최초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 </div>
	③ 근로 계약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(1년 이상 계약(미국제외))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 계약기간, 취업 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 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 서명 및 근로자 서명 등 기재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▶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서류로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 </div>
	④ 재직 증명서 (이직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직한 회사의 기업명,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,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- ②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(365일)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함 </div>
	⑤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(월드잡플러스 메뉴에서 전자서명)	
⑥ 신청자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「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」		
* 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에 대해 1차 신청처럼 취업사실 확인을 득하여야 함		

1. 지원제외 대상

-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
 - * 월드잡플러스에 명단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
- 유사사업*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
 - * 유사사업 :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해외취업자에게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
- 그 밖에 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2. 환수

-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「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」 등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환수 등 조치
- 유사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 지원금을 먼저 반납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

3. 부정이익 신고센터 운영

-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에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월드잡플러스 내 부정이익 신고센터에 「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」 별지 제4호 및 제5호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
- 부정이익 신고 접수 시 공단에서는 사실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조치 예정

- 지원금 신청서는 접수 순으로 검토 후 지급하며,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예산 소진 시 즉시 사업을 마감함
 - * 서류마감기한(필요 시 별도 공지)이 남았더라도 사업 마감시 신청 불가
-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월드잡플러스 앱 또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(www.worldjob.or.kr)를 통해서만 가능
 - *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
- 신청기한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'나의 신청기한'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
- 출입국 기록 소명 사유 발생 시 공단이 소명을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며,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
 - *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내 소명, 마감 이후 소명 불가
- 1차 지원금 서류 제출 시,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본(한글)으로 제출
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지원 취소 및 환수
 - * 월드잡플러스 내 연락처(휴대 전화번호, 이메일, 현지 연락처 등) 기재 착오 또는 변경 사항 미반영 등으로 인해 연락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

【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】

절 차	주 체	일 정	수행 내용
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	구직자	연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드잡플러스 (www.worldjob.or.kr)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
↓			
② 취업성공	구직자	연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증빙 서류 확보 및 1차 지원금 신청 준비
↓			
③ 1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업체에서 1개월 근무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④ 1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'24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↓			
⑤ 2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⑥ 2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'24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↓			
⑦ 3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취업일 후 12개월 근무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⑧ 3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'24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
붙임 2**취업비자 인정기준**

순번	국가	취업비자 인정기준
1	일본	- 취업비자 :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업무, 기능
2	캐나다	- 취업비자 : Work Permit, 한-캐FTA - 인턴비자 : Post-graduation Work Permit
3	호주	- 취업비자 : 482고용비자, 407비자 등
4	싱가포르	- 취업비자 : EP(전문인력비자), S pass, WP(work permit)
5	중국	- 취업비자 : Z비자, (홍콩 : EMPLOYMENT비자), 거류증(工作)
6	미국	- 취업비자 : H-1B, H-1C, H-2B 등 - 인턴비자 : OPT(F1비자 같이 제출), J-1
7	뉴질랜드	- 취업비자 : Work Visa
8	필리핀	- 취업비자 : 9G비자, 47(a)(2)비자, AEP, Clark Visa
9	인도네시아	- 취업비자 : Stay Permit Index가 표시되어 있는 ITAS/KITAS
10	베트남	- 취업비자 : LD (거주증 앞뒷면 모두 제출)
11	말레이시아	- 취업비자 : Employment Pass
12	아랍에미리트	- 취업비자 : Residence Visa
13	독일	- 취업비자 : Residence For Employment, EU Blue Card

※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1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해당국 취업비자 인정

붙임 3

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

-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며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신청자가 미혼이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/이혼/재외국민/외국인일 경우 아래 표에 안내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

<추가 제출서류>

구분	부	모	제출서류(상세본)	추가서류
신청자 미혼	생존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)	-
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-
	생존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이혼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
	이혼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이혼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이혼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사망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
	사망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
	사망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본인)	-
	사망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	재외국민·외국인	재외국민·외국인	-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

* 부모·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신청자 본인이 인터넷 발급 가능(정부24, 대법원)

** 발급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로 제출 가능

[서식 1] ※ 본인 동의서는 월드잡플러스 앱 또는 웹사이트 신청화면에서 전자서명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 부터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의 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선정·심사(출입국 기록,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,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)

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 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 항목	(본인) 성명, 주소, 이메일, 전화번호, 계좌정보, 위치정보	준영구

2.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및 해외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한국산업인력공단, 고용노동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외교부, 건강보험공단, 한국고용정보원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해외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(구직등록정보, 건강보험정보, 출입국사실확인, 유사사업 지원금 수혜여부) 및 참여자의 사후관리 지원 및 해외취업 효과분석, 정책방향 수립

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성별, 전화번호, 취업국가, 취업처, 취업직종, 이직/퇴직 여부, 임금, 국내 복귀·취업 여부

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취업일로부터 2년간

*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		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해외근무 사실·소득분위·중복수혜 확인	<u>주민등록번호</u>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※ 귀하는 상기 1~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,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성명	<u>주민등록번호</u>	수집·이용	3자 제공	서명

0000. 00. 00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가족용)

본인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_____ 의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수집 정보 : 성명, 신청자와의 관계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
- 조회 정보 :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조회 목적 : 소득 분위 확인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조회
- 정보 보유기간 : 준영구

성명	신청자와의 관계 (부/모/배우자/자녀)	주민등록번호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자필서명
		휴대전화번호	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			동의(), 미동의()	
홍길동	부	123456-123456	동의(○), 미동의()	홍길동
		010-xxxx-xxxx	동의(○), 미동의()	홍길동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>
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를 통한 소득분위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2024. 00. 00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(1차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본인은 「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1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“예”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		
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, 아래 질문에 답하십시오.		
실 근무기간	인정기간	신청자격 제외 여부 질문
1개월 이하	0년	만 35세 이상입니까?
1개월 초과~12개월 이하	1년	만 36세 이상입니까?
12개월 초과~24개월 이하	2년	만 37세 이상입니까?
24개월 초과~36개월 이하	3년	만 38세 이상입니까?
36개월 초과~48개월 이하	4년	만 39세 이상입니까?
48개월 초과	5년	만 40세 이상입니까?
[] 예 [] 아니오		
② 연봉 1,700만원 미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③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④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드잡플러스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⑤ 배우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⑥ 이전에 한 번이라도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⑦ 국내 기업에 재직 중입니까?(휴직 등 포함)		
[] 예 [] 아니오		
⑧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⑨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⑩ 신청 서류 중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?		
[] 예 [] 아니오		
<p>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착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] 예 [] 아니오</p>		
○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* 지원 이력 유무		
* 체재비란 주거비 등 해외에서 실제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		
→ “있음”에 체크한 경우, 아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.		
- 지원일자 : 년 월 일	- 지원기관 :	
- 지원목적 :	- 지원금액 : 원	

년 월 일

확인자: 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(2차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본인은 「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2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“예”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	
① 배우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
② 1차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을 하였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
③ 신청 서류 중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
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착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[] 예 [] 아니오	
○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* 지원 이력 유무 * 체재비란 주거비 등 해외에서 실제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→ “있음” 에 체크한 경우, 아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.	[] 있음 [] 없음
- 지원일자 : 년 월 일	- 지원기관 :
- 지원목적 :	- 지원금액 : 원

년 월 일

확인자: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정착지원금 신청자 확인서(3차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본인은 「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3차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“예”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.	
① 배우자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
② 1차 또는 2차 정착지원금 수령 후 이직을 하였습니까? ↳ “아니요” 라고 답변 시 ③번 문항으로 이동	[] 예 [] 아니오
②-1 (2번 문항에 “예” 라고 답변한 경우) 기존 회사와 이직 후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의 합이 365일 미만입니까?	[] 예 [] 아니오
③ 신청 서류 중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착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[] 예 [] 아니오</p>	
○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* 지원 이력 유무 * 체재비란 주거비 등 해외에서 실제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→ “있음” 에 체크한 경우, 아래 정보를 기입하십시오.	[] 있음 [] 없음
- 지원일자 : 년 월 일	- 지원기관 :
- 지원목적 :	- 지원금액 : 원

년 월 일

확인자: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